충청북도 경관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

# 검토보고서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남 범 우

충청북도 경관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0년　8월 26일

○ 회부일자 : 2020년　8월 28일

## 3. 제안이유

○ 경관법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충청북도 경관의 기본방향과 전략 제시로 경관을 보전하고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립한 충청북도 경관계획안에 대해 도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함

## 4. 주요내용

### 가. 계획의 범위

○ 시　간 : '20년 ~ '24년　※ 5년마다 수립

○ 공　간 : 도내 11개 시군 전지역

○ 내　용 : 특성별 경관 보전방향 및 발전방향 제시

### 나. 계획안 주요내용

○ 충청북도 경관 미래상

- 고유의 경관가치를 나누고, 아름다움을 더하는 충북

○ 4대 추진목표

- 지역간 소통과 시너지를 만드는 계획
-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도 공감하는 계획
- 경관 관리계계를 재구축하는 계획
- 지역여건에 맞는 실행가능한 계획

○ 기본 계획

- 경관권역 계획(3) : 북부권, 중부권, 남부권
- 경관축 계획(4) : 산림녹지, 수변, 도로, 철도
- 경관거점 계획(5) : 산림, 수변, 지표, 도시진출입, 역사·문화
- 시·군별 계획 : 11개 시군

○ 중점경관 관리구역 계획

- 중점경관 관리구역 보완 및 신규 대상자원안 제시
- 반영대상(3개 시군), 보완 필요대상(2개 시군), 신규 설정대상(6개 군)

○ 경관지구 관리계획

- 유형별(자연, 시가지, 특화 경관지구) 경관관리 지침 제시

○ 특정 경관유형 관리계획

- 유형별 : 산림, 수변, 농산촌, 역사문화, 가로경관
- 요소별 : 건축물, 색채, 야간경관, 옥외광고물, 가로시설물, 오픈 스페이스

○ 세부실행계획

- 경관행정 및 제도 선진화 검토

-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경관 관리방안 제시
-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추진방안 제시

## 5. 그동안 추진경위

○ 19. 2. 22. : 충청북도 경관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
○ 19. 6. 24. : 착수보고회 개최
○ 19. 12. 9. : 중간보고회 개최(1차)
○ 20. 4. 10. : 중간보고회 개최(2차)
○ 20. 6. 19. : 경관계획안 공청회 개최
○ 20. 7. 14. ~ 8. 12. : 관계기관 협의

## 6. 향후 추진계획

○ 20. 9. : 충청북도 경관위원회 심의
○ 20. 10. : 충청북도 경관계획 최종보고회
○ 20. 11. : 충청북도 경관계획 완료
○ 20. 12. : 경관계획 공고 및 관계기관 송부

## 7. 검토의견

### 가. 의견청취 목적 및 필요성

○ 2006년에 수립한 「충청북도 경관계획」은 경관구조적 차원의 관리와 유형별 관리부분에서 관리수단 연계가 부족하고 개정된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의 지침항목과의 적합성도 부족하

여 현 체계에 맞는 재정비가 필요

○ 도시·자연·역사·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경관 형성·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실행력이 갖춰진 경관계획 수립

○ 기존 수립한 경관기본계획상의 경관유형별 계획원칙, 권역별 경관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참고하여 경관구조를 재검토 하고,

– 토지이용에 따른 유형별, 요소별 경관계획을 구상하여 도시기반시설, 공공시설물, 건축물 등의 경관관리를 체계적으로 유도 할 수 있는 경관행정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

## 나. 경관계획안 주요내용

○ 경관미래상 및 추진전략 설정

- 경관미래상은 ‘고유의 경관가치를 나누고, 아름다움을 더하는 충북’ 으로 하고,
- 경관관리체계의 재구축, 지역여건에 맞는 실행력, 지역간소통과 시너지,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4대 목표를 설정

○ 경관권역·축·거점계획

- 기존의 경관계획의 골격 구조를 반영하되 경관계획의 내용과 대상을 구체화

□ 경관권역
- 기존의 3개 권역개념을 유지하며 충청북도에 접한 인근 시도의 경관권역 계획을 검토하여 반영

□ 경관축
- 산림녹지축은 산림자원의 기치보존 및 주변부 경관관리
- 수변경관축은 생태환경 보존 및 지역관광자원화 개념확산
- 도로경관축은 도로주변 위해경관 차폐 및 도로환경 쾌적성 향상
- 철로경관축은 철로주변시설 개선 및 역주변 개발사업지역 쾌적한 경관형성 유도

□ 경관거점
- 산림경관거점 41개소는 조망차폐요소 억제 및 조망명소화 유도
- 수변경관거점 21개소는 수자원을 중심으로 여가·문화활동 가능토록 완화
- 지표경관거점 3개소는 랜드마크 공공건축물 지표 역할토록 쾌적성 유지
- 역사문화경관거점 53개소는 역사적 가치 지속보존 및 시민생활 중심공간으로 공공가치 유도
- 도시진출입경관거점 7개소는 충북의 도시이미지 인지 유도

○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

- 시군별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현황에 따라 도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지역은 3개 시군이고, 보완이 필요한 지역은 2개 시군이며, 신규 설정대상 지역으로 6개 군이 해당

## 다. 실행계획 확보 및 개선사항

○ 경관행정 및 제도 선진화

- 도 와 시군간의 역할 및 책무에 대한 구체적 내용 제시 필요
- 기존 제정된 시군의 조례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며, 조례가 없는 3개 군은 조속히 제정 필요

- 타 시·도지역의 조례 및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우수사례를 반영
- 경관심의제도의 구체적 운영방법과 경관심의 검토기준 등이 불명확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준제시 필요

○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관리방안
- 충북은 도시지역이 9.9%(2017년기준)에 불과하여 향후 비도시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자연경관 훼손 우려
-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검토하여 향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경관계획과 연계 필요

○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추진방안
- 도와 시군의 경관사업과 관련된 규정 조례 및 계획을 비교검토하여 시군에서 활발하게 경관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차원으로 지원근거 마련
-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경관을 보전관리할 수 있는 경관협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제도 마련

## 라. 종합의견

○ 경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에서는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이 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함

○ 특히, 도민참여율을 높여 지역 및 도민간의 이해충돌을 최소화하고 시군 및 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경관계획 수립에 노력

○ 아울러, 본 계획안은 5년 단위 중·장기 계획으로 추진 중에 발생되는 계획의 변경·보완 사항과 도시기본계획, 도시관리계획 등 기타 다른 법률·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붙 임: 충청북도 경관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1부. 끝.